

첨부.

## 인천불로 대광로제비양 기관추천(일반) 특별공급 관련 안내문

### 1. 공급개요 및 일정

■ 공급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불로동 803-1번지 일원

■ 공급규모 및 내역 : 아파트 지하 2층, 지상 17~27층 6개동 총 556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 기관추천 특별공급 배정 세대수

구 분			기관추천 특별공급 배정세대 (예비)						계
			61A	61B	74A	74B	84A	84B	
기관추천 특별공급 세대수 (괄호안의 숫자는 예비입주자 세대수)	장애인	인천광역시	2 (1)	1 (1)	2 (1)	1 (1)	1 (1)	1 (1)	8 (6)
		서울특별시	1 (1)	1 (1)	1 (1)	-	1 (1)	-	4 (4)
		경기도	1 (1)	1 (1)	1 (1)	-	1 (1)	-	4 (4)
		소계	4 (3)	3 (3)	4 (3)	1 (1)	3 (3)	1 (1)	16 (14)
	10년이상 장기복무 군인	인천광역시	2 (1)	1 (1)	1 (1)	1 (1)	1 (1)	-	6 (5)
		수도권	1 (1)	-	1 (1)	-	-	-	2 (2)
		소계	3 (2)	1 (1)	2 (1)	1 (1)	1 (1)	-	8 (7)
	국가유공자	인천광역시	2 (1)	1 (1)	2 (1)	1 (1)	1 (1)	1 (1)	8 (6)
		수도권	1 (1)	-	1 (1)	-	1 (1)	-	3 (3)
		소계	3 (2)	1 (1)	3 (1)	1 (1)	2 (2)	1 (1)	11 (9)
	장기복무 제대군인	인천광역시	2 (1)	1 (1)	1 (1)	-	1 (1)	-	5 (4)
		수도권	1 (1)	-	1 (1)	-	-	-	2 (2)
		소계	3 (2)	1 (1)	2 (1)	-	1 (1)	-	7 (6)
	중소기업근로자	인천광역시	2 (1)	1 (1)	1 (1)	1 (1)	1 (1)	-	6 (5)
		수도권	2 (1)	-	1 (1)	-	1 (1)	-	4 (3)
		소계	4 (2)	1 (1)	2 (1)	1 (1)	2 (2)	-	10 (8)
총 계			17 (11)	7 (7)	13 (11)	4 (4)	9 (9)	2 (2)	52 (44)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전으로 공급세대수가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일정계획 (예정)

구 분	일 자	참고 사항
입주자모집공고일	2019. 03. 14.(목)	
견본주택 개관	2019. 03. 15.(금)	경기도 김포시 김포대로 730
특별공급 청약 접수일자	인터넷 접수 2019년 03월 19일(화) 08시~17시30분 견본주택 방문접수 2019년 03월 19일(화) 10시~14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터넷청약 : 금융결제원 홈페이지(www.ap2you.com),</li> <li>● 견본주택 : 경기도 김포시 김포대로 730</li> </ul>
당첨자 및 동·호수 발표	2019. 03. 27(수)	당사 견본주택 및 홈페이지 게재
계약 기간	2018. 04. 08(월) ~ 10(수)	당사 견본주택

※ 모집공고일 등 상기 일정은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전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를 위한 예정사항으로 향후 모집공고 승인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 중 철거민,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통장미사용 대상자도 인터넷 청약신청이 가능하나 인터넷 청약신청 전 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반드시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청약 신청은 인터넷 청약 신청이 원칙이며, 노약자 및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신청이 어려운 자에 한해서 견본주택 방문 청약 접수를 받습니다. (일반인 특별공급 견본주택 방문 청약접수 불가)

※ 특별공급 방문 청약접수는 접수마감시간 이후에는 추가로 접수하지 않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자격요건

구분	내용
1회 한정 / 자격요건 / 자격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으려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1호 및 제8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li> <li>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li> </ul>
무주택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 한정)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각각 신청, 중복 청약하여 당첨될 경우에는 모두 부적격 당첨으로 당첨이 취소됨.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당첨 제한]</li> <li>-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주택공급신청자</li> <li>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li> <li>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li> <li>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li> <li>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li> </ul> </li> </ul> </li> </ul> </li> </ul>
청약자격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국가유공자 등, 장기복무제대군인, 장애인, 중소기업근로자, 10년이상복무 군인, 북한이탈주민, 우수선수에 해당하는 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특별공급 대상 해당 기관장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단, 거주요건 등 우선순위 기준은 해당 기관장이 정하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함)</li> <li>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국가유공자, 장애인, 월가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li> <li>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 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li> <li>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li> </ul> </li> </ul>

### ■ 청약 예치 기준금액

구분	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	경기도
전용면적 85㎡ 이하	250만원	300만원	200만원

###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미신청시 당첨자선정(동·호배정)에서 제외되며 계약불가]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금융결제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기관추천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
-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는 유형별 구분 없이 타입별 배정물량의 40% 범위에서 선정합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예비입주자 물량에 미달된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 특별공급 신청 후 당첨 시 개별통지 하지 않으며, 당첨자 명단에 대한 전화문의는 혼란 방지를 위하여 응답하지 않

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 및 제26조에 의거 특별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 미계약 등으로 배정 물량이 남을 경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를 대상으로 우선공급하며,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3.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신청자격 구비서류

해당서류	서류유형		발급 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해당 기관장의 추천서 또는 인정서	○		본인	장애인의 경우 지자체장이 발행한 장애인 증명서만 인정함(복지카드 등 기타서류 불가) 국가유공자의 경우 국가유공자(유족) 확인원
특별공급신청서, 무주택서약서	○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무주택 입증서류(무주택 서약서로 대체)
인감증명서	○		본인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용도 : 주택공급신청용(본인 발급용)
인감도장	○		본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 신청시는 제출 생략
주민등록증	○		본인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주민등록표등본	○		본인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 포함하여 발급요망
주민등록표초본		○	본인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요망
주민등록표등본		○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상기 등본 발급 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	단독세대 이거나 배우자와 세대가 분리된 경우
청약통장순위 확인서	○		본인	청약통장 가입은행으로부터 순위 내역 발급 또는 주택청약 서비스 금융결제원 아파트투유(www.APT2you.com)홈페이지에서 청약통장 순위확인서 발급 (단,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통장미사용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제3자 대리인 신청시 추가사항	위임장 1부, 청약신청자 인감증명서(위임용) 1부, 청약신청자 인감도장, 대리인 신분증 및 인장			

※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서류 미비 시 접수받지 않음.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4. 유의사항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상속,증여,경매 등으로 취득한 경우 제외)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부칙 제3조)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매매대금 완납일'(실거래 신고서상) 기준 주택 소유로 봄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제3항에 의거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 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 및 제34조 제1항 제1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인천광역시 거주자(50%),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거주자(50%) 순으로 우선공급 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50조에 따라 특별공급도 인터넷청약(APT2you)을 원칙으로 하며, 노약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는 방문접수(견본주택)가 가능하며, 해당 신청일 10:00~14:00까지만 접수 가능합니다.

- 인터넷 청약(APT2you)의 경우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당첨자 공급계약 체결 전 사업주체와 제출하시기 바라며, 방문접수 (건본주택) 시에는 공급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특별공급 방문접수는 건본주택에서만 가능하며 은행창구에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공급에도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일반청약은 무효로 처리하고, 특별공급 신청자가 타 유형의 특별공급에 중복 청약시 둘 다 무효처리 됩니다.
- 특별공급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입력 값(자료)으로 우선 입주자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하며, 당첨취소세대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신청 이후에는 신청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습니다.
- 공급금액, 전매제한기간, 재당첨제한기간, 공급대상 주택관련 세부사항 및 유의사항은 **2019.03.14.(목)** 예정인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시어 공고문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사항 등은 ‘인천불로 대광로제비앙’ 건본주택 및 안내 서류 다시 한번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일정 및 사항은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전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를 위한 예정사항으로 향후 모집공고 승인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 인천불로 대광로제비앙 현장 위치도



## 6. 견본주택 위치 및 분양문의

